

종 법(宗法)

종승위원회법

제1조 종헌 제97조에 의해 본종의 종지 종풍 종전 종승 연구 정립을 위하여 종승위원회를 둔다.

제2조 종승위원회는 종단의 종지 종풍 종승의 확립과 종전 연구 및 분석 기구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3조 이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.